

보도	2026.7.7.(화) 조간	배포	2026.7.6.(월)
담당부서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제도팀	책임자 담당자	국 장 유석호 (02-3145-6700) 팀 장 류지웅 (02-3145-6717)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의결권 점검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26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등 점검 결과 -

[개 요]

□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 (285개사, 총 46,827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

* 공·사모펀드 행사율 및 반대율 : ['24년] 79.6%, 5.2% → ['25년] 91.6%, 6.8% → ['26년] 91.8%, 8.2%

** (참고) '25년 국민연금의 행사율은 99.8%, 반대율은 23.1%

□ 주주권행사 체계의 경우 대형 공모운용사는 그간 '전담조직·의사결정기구·KPI'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해 온 반면, 중·소형사는 아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규모별 격차가 존재

① (모범사례) 전년도 모범 4社*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삼성·NH-Amundi·VIP가 의결권행사, 내부 관리체계 측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

* 미래·트러스트·교보AXA·신영

○ [삼성·NH-Amundi] 담당조직·KPI 등 주주권 행사 관리 체계를 충실히 구비하고, 경영진면담, 주주서한 등 주주활동도 활발하게 수행

○ [VIP] 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 인원이 운용규모 대비 가장 많으며(4명),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② (미흡사례) 신한·우리·삼성엑티브의 경우 운용규모 등을 고려시 의결권 행사 사유의 중복기재율*이 높거나 주주권행사 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개선 필요

* 서로 다른 안건임에도 의결권 사유를 "주주권리 침해없음"과 같이 동일한 문구로 기재한 비율

③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운용사 CEO 간담회(7.13.) 및 공·사모운용사 대상 설명회(7~8월)를 개최하여 자산운용사가 주주권을 충실히 행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

I. 점검 배경

- 자본시장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성장하는 가운데 운용사의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주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큰 상황

* (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소수주주 권한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통한 일련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그러나 찬성 위주의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 형식적 공시, 관련 조직 및 내부관리 취약 등 실제 운영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상존

⇒ 이에 펀드의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을 점검하는 한편 공모 자산 운용사를 대상으로 주주권행사 체계 구축 전반을 점검

II. 의결권 행사·공시내역 점검

< 점검 개요 >

- (점검 대상) '25.4.~'26.3. 기간 중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285개 공·사모운용사 (총 46,827개 안건)
- (점검 내용) ①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현황, ②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공시 현황, ③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점검 결과, 공모 운용사를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 사유 기재, 공시서식 준수 등 정량적 측면은 점차 개선*된 것으로 평가

* [행사율] '24 79.6 → '25 91.6 → '26 91.8(%) [반대율] '24 5.2 → '25 6.8 → '26 8.2(%)

- 미흡사례 대부분은 소형 사모운용사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모 운용사에 의결권 행사·공시 관련 지도를 보다 강화할 예정

1 의결권 행사 현황

- (개요) 285개 공·사모운용사는 '25.4월~'26.3월 기간중 총 46,827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실을 공시

* 자산운용사별 의결권 행사로 인하여 각 운용사가 행사한 중복 안건 포함

- 찬성 건은 38,602개(82.4%), 반대 건은 3,848개(8.2%), 불행사·중립행사 건은 4,377개(9.4%)로 행사율 및 반대율이 전년 대비 소폭 개선*

* (참고) '25년 국민연금의 행사율은 99.8%, 반대율은 23.1%

[의결권 행사 현황 (단위 : 안건수, %)]

연도**	의결권 행사 방향					총 안건수
	찬성	반대	중립	행사	불행사	
'25년	24,015(82.9)	1,973(6.8)	544(1.9)	26,532(91.6)	2,437(8.4)	28,969(100.0)
'26년	38,602(82.4)	3,848(8.2)	531(1.2)	42,981(91.8)	3,846(8.2)	46,827(100.0)

* '24년 행사율 : 79.6%, 반대율 : 5.2%

** 의결권 행사 시점이 아니라, 점검실시 시점 기준(이하 동일)

- 행사사유 기재가 양호*한 회사는 70사로 전년(41사) 대비 증가(15%→25%)

* 행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모든 공시 서식을 준수

- 이에 반해 모든 안건에 대한 일괄불행사 50사(17.5%, 전부 일반사모), 일괄찬성 82사(29.0%, 일반사모 77社) 등 미흡한 사례는 전년 대비 감소

* [25년 점검결과] 일괄 불행사 : 74개사(27.1%), 일괄 찬성 : 97개사(35.5%)

- (주요 반대 안건) 총 46,827개 안건 중 3,848개(8.2%)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으로 의결권을 행사

- 안건 유형별로는 ①임원 보수(1,006건, 11.7%), ②정관 변경(1,200건, 9.2%), ③이사·감사의 선·해임(1,163건, 7.2%) 등에 '반대' 의견 행사

[세부 안건별 의결권 행사 현황 (단위 : 안건수, %)]

안건 분류	구분	행사			불행사	합계
		찬성	반대	중립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건수	10,035	716	153	988	11,892
	(비율)	(84.4%)	(6.0%)	(1.3%)	(8.3%)	(100.0%)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건수	3,636	447	42	230	4,355
	(비율)	(83.5%)	(10.3%)	(1.0%)	(5.3%)	(100.0%)
정관 변경	건수	10,841	1,200	129	854	13,024
	(비율)	(83.2%)	(9.2%)	(1.0%)	(6.6%)	(100.0%)
임원 보수	건수	6,489	1,006	94	981	8,570
	(비율)	(75.7%)	(11.7%)	(1.1%)	(11.4%)	(100.0%)
결산 및 배당	건수	4,878	253	66	545	5,742
	(비율)	(85.0%)	(4.4%)	(1.1%)	(9.5%)	(100.0%)
자본 구조 (증자·감자 등)	건수	1,480	87	19	175	1,761
	(비율)	(84.0%)	(4.9%)	(1.1%)	(9.9%)	(100.0%)
조직 변경 (합병·분할 등)	건수	98	3	3	12	116
	(비율)	(84.5%)	(2.6%)	(2.6%)	(10.3%)	(100.0%)
기타	건수	1,145	136	25	61	1,367
	(비율)	(83.8%)	(9.9%)	(1.8%)	(4.5%)	(100.0%)
합계		38,602	3,848	531	3,846	46,827

2

점검 결과

1.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 285개사 중 121개사(42.4%)가 의결권 안건의 절반 이상을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없음' 등 형식적인 내용으로 기재

- 일부 사모운용사는 내용·유형(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이 서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의결권 행사사유를 동일하게 일괄 기재*하여 투자자가 실제 행사근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평가할 수 없게 함

* 일괄기재 사유 예시 :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우려할 만한 사항이 없어 찬성, 주주권리 침해 우려로 반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현황 (항목별 중복 가능, 단위 : 개사, %)]

구분	유형별 불성실 기재 (중복 산정)						불성실 기재	점검대상 운용사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특이사항 없음	세부지침 언급불충분	기타	미기재		
'24년	87(31.8)	71(25.9)	30(10.9)	34(12.4)	75(27.4)	2(0.7)	265(96.7)	274(100.0)
'25년	27(9.9)	33(12.1)	14(5.1)	5(1.8)	34(12.5)	3(1.1)	72(26.4)	273(100.0)
'26년	41(14.4)	49(17.1)	25(8.7)	12(4.2)	78(27.3)	-	121(42.4)*	285(100.0)

* 대부분 소규모 일반사모운용사임

주요 사례

① 미흡 사례

- ✓ A사는 214개의 이사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결격사유 및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 으로 일괄 기재
- ✓ B사는 121개 안건의 행사 사유에 대해 '후보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책임자', '회사가 제시한 보수한도는 경영성과를 고려한 범위로 판단되어 찬성'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고 일괄 찬성

② 모범 사례

- ✓ C사(일반사모운용사)는 안건별로 검토 배경, 투자대상회사 현황, 이사 후보의 약력 등을 자세히 언급한 후 자사 내부규정내 근거를 밝히며 의결권 행사

2. 내부지침 공시

□ 285개사 중 59개사(20.7%)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할 뿐 안건별 행사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 미공시

- 또한, 51개사(17.8%)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23.10월)을 반영하지 않는 등 의결권 행사 지침을 형식적으로 운영

[의결권 행사 내부지침 공시 현황 (단위 : 개사, %)]

구분	세부지침 공시		세부지침 미공시	합계
	개정 가이드라인 ('23.10.) 반영	미반영		
'24년	51 (18.6)	102 (37.2)	121 (44.2)	274 (100.0)
'25년	162 (59.3)	54 (19.8)	57 (20.9)	273 (100.0)
'26년	175 (61.4)	51 (17.8)	59 (20.7)	285 (100.0)

주요 사례

① 미흡 사례

- ✓ D사는 한국거래소 공시채널(KIND)에 의결권 행사 관련 일반규정(내규)는 공시하였으나 의결권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은 미공시

② 모범 사례

- ✓ E사 등 175개사는 의결권 행사 일반규정 및 세부지침을 모두 공시하고 있으며, '23.10월 개정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반영

3. 거래소 공시 서식 준수

- 285개사 중 87개사(30.5%, 일반사모 77社)는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 68개사(23.8%, 일반사모 65社)는 의안 유형을, 134개사(47.0%, 일반사모 120社)는 대상 법인과 관계 기재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공시서식 기재오류 사례가 일반사모운용사에서 다수 발견

[주요 공시서식 기재 오류 현황 (항목별 중복 가능, 단위 : 개사, %)]

구분	의안명 미흡 기재	의안 유형 미기재	대상 법인과의 관계 미기재	지분 비율 미기재	점검대상 운용사
'24년	246 (89.8)	233 (85.0)	198 (72.3)	12 (4.4)	274 (100.0)
'25년	86 (31.5)	62 (22.7)	149 (54.6)	10 (3.7)	273 (100.0)
'26년	87 (30.5)	68 (23.8)	134 (47.0)	12 (4.2)	285 (100.0)

주요 사례

① 미흡 사례

- ✓ 공시 서식에 따라 의안명 기재시 "사내이사 홍길동 선임의 건" 등으로 후보자명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에도, F사 등은 "사내이사 선임"으로만 간략히 기재
- ✓ 공시 서식상 의안명과 의안 유형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함에도, G사 등은 의안명, 의안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의안명만 기재

② 모범 사례

- ✓ 대부분 대형사는 피투자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안)"에 대한 의안명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000선임의 건" 등과 같이 공시서식 및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상세히 기재하고 있음

Ⅲ. 주주권행사 체계 점검

< 점 검 개 요 >

- **(점검 대상)** '26.3월말 기준 공모운용사 67사
- **(점검 부문)** ①내부 관리체계의 적정성, ②의결권 행사의 충실성, ③이해상충 방지체계 구비 여부, ④기타 주주활동
- **(점검 결과)** 내부 전담조직, 의사결정기구, KPI 등 내부통제를 갖춘 공모운용사가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공시하고, 주주활동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대형 공모운용사는 그간 주주권행사 프로세스를 개선해온 반면, 중·소형사는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규모별 격차가 존재

1. 내부 관리체계의 적정성

- **(조직 현황)** 18개사(26.9%)는 의결권 등 주주권행사 관련 전담조직(소속직원은 평균 4.2명)을 별도로 운영 중인 반면,
 - 나머지 49개사는 독립된 전담조직 없이 운용·리서치부서의 섹터별 담당자가 겸업하거나, 경영지원 등 백오피스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
- **(의사결정 기구)** 40개사(59.7%)는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수탁자책임委' 등 별도 의사결정기구(구성인원은 평균 6명) 설치*
 - * 나머지(27개사)는 별도 의사결정기구 없이 담당운용역/운용본부장이 의안별 중요도에 따라 전결
- **(KPI)** 전년(12개사) 대비 8개사가 증가된 20개사(29.9%)가 의결권 행사 관련 업무실적* 등을 KPI에 반영

* 의결권 행사 건수, 공시규정 준수 여부, 주총 의안분석 등

[내부 관리체계 구축 현황 (단위 : 개사)]



2. 의결권 행사의 충실성

-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공시 충실도와 관련하여 중복기재율*을 점검한 결과, 대형사는 11.6%, 중·소형사는 31.1%로 행사사유 일괄 기재가 중·소형사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히 발생

* 내용·유형이 서로 다른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사유를 동일하게 일괄 기재*한 비율. 이 경우 투자자가 실제 행사근거를 구체적으로 파악·평가할 수 없게 하는 문제

- (주요 반대 안건) ①임원 보수(910건, 16.8%), ②정관 변경(1,090건, 11.6%), ③자본구조(164건, 11.2%) 順으로 '반대' 의견 행사

- 특히, 개정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이사의 임기하한선(3년) 삭제, 이사의 책임 감경 등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 행사

[공모 운용사 세부 안건별 의결권 행사 현황(단위 : 안건수, %)]

안건 분류	구분	행사			불행사	합계
		찬성	반대	중립		
임원 선·해임	건수	10,324	1,048	175	105	11,652
	비율	(88.6%)	(9.0%)	(1.5%)	(0.9%)	(100.0%)
정관 변경	건수	8,124	1,090	64	109	9,387
	비율	(86.5%)	(11.6%)	(0.7%)	(1.2%)	(100.0%)
임원 보수	건수	4,315	910	57	135	5,417
	비율	(79.7%)	(16.8%)	(1.1%)	(2.5%)	(100.0%)
결산 및 배당	건수	3,465	240	53	82	3,840
	비율	(90.2%)	(6.3%)	(1.4%)	(2.1%)	(100.0%)
자본 구조 (증자·감자 등)	건수	1,274	164	16	14	1,468
	비율	(86.8%)	(11.2%)	(1.1%)	(1.0%)	(100.0%)
조직 변경 (합병·분할 등)	건수	63	1	2	6	72
	비율	(87.5%)	(1.4%)	(2.8%)	(8.3%)	(100.0%)
기타	건수	646	45	23	18	732
	비율	(88.3%)	(6.1%)	(3.1%)	(2.5%)	(100.0%)
합계		28,211	3,498	390	469	32,568

3.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

- 대부분 법상 규제 내용*을 문구 그대로 내규에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며, 일부 대형사만 법규제 이상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자체 추가

* Shadow voting, 제3자와의 의결권 교차행사 금지, 펀드재산간 이해상충 존재시 의결권 불통일 행사 등(자본시장법 §87)

4. 기타 주주활동

- 경영진 면담·주주제안·주주대표소송 등 실질적 주주활동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문의메일 발송 등 단순활동 비중이 높음

IV. 모범 및 미흡사례

1. 모범사례 : 3개사

☑ 작년 모범사례였던 미래, 교보AXA, 트러스톤, 신영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 삼성, NH-Amundi, VIP는 ①내부 관리체계 적정성, ②의결권행사 충실성, ③이해상충 방지 및 ④주주활동 등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

□ (삼성) 전담조직 신설, KPI 운영, 의사결정기구 강화*, 의결권 자문사 신규 선정시 현장실사 실시 등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및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

* 구성인원 확대(3→4명), 위원장 직급 격상(준법감시인→임원), 위원회 부의대상 확대

□ (NH-Amundi) 의사결정기구를 의결권행사와 신인의무 이행 전반으로 이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며,

* ①의결권행사팀 : 의결권 관련 기준·방법·절차·행사 등 구체적 사항 의결

②수탁자책임팀 : 집중관리대상 선정, 수탁자책임 활동 수행공시, 외부 전문기관 선정 등 의결

- 의결권 행사, 주주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수록 높은 성과평가를 받도록 KPI 운영* 및 단계적 강화기준을 마련

* 의결권 행사 건수, 주주활동 내역, 스튜어드십활동보고서 공시 등

□ (VIP) 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의 인원이 운용규모 대비 가장 많으며(4명), 주주서한·경영진 면담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

□ (기타) 작년 미흡사례였던 한국투자·KB는 의결권 행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일괄 기재 사례도 없는 등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충실성을 대폭 개선

2. 미흡사례 : 3개사

☑ **신한, 우리, 삼성엑티브**의 경우 의결권 행사 사유 공시 불충분, 전담 조직 등 내부 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신한)** 이사 선임 안전에 대해 '결격사유 및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찬성*' 등으로 일괄 기재하였고,

* 선임 반대의 경우 그 사유를 적절히 작성하였으나, 찬성의 건에 대해 일괄 작성

○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별도 의사결정기구*·KPI 체계가 없음

* 다만, 점검대상기간 이후인 '26.6.8. 사외이사가 위원장을 맡는 '수탁자책임위원회' 신설

□ **(우리)** 의결권 찬성률(91.5%)이 높은 가운데 의결권 행사 사유의 중복기재율(73.4%)도 대형 공모운용사 중 가장 높아,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평가할 수 없게 됨

○ 또한, 의결권행사 관련 전담조직이 없으며, 의결권 행사 세부 지침을 미공시*[상위 내규만 공시]함에 따라 투자자가 운용사의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근거도 확인하기 어려움

* 다만, 점검대상기간 이후인 '26.6.29.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일체를 공시

□ **(삼성엑티브)** 의결권 행사사유의 중복기재율이 77.3%로서 투자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공시 정보 제공이 미흡한 수준

○ 또한, 의결권 행사 관련 KPI가 없으며, 의결권 행사 세부지침은 공시한 반면, 상위 내규는 미공시

※ (참고) 자본시장법§87⑨ 집합투자업자는 제8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V. 평가의견 및 향후 계획

1. 평가 의견

- **(의결권 행사 현황)** 공모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사유 기재, 공시서식 준수 등 정량적 측면은 점차 개선되고 있음
 - 한편, 미흡사례 대부분은 소형 사모운용사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모운용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공시 관련 지도를 강화할 계획
-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대형사는 관련 체계를 일정 정도 구비한 반면, 중·소형사는 제반 인프라 구축이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규모별 격차가 존재하나,
 - 내부 관리체계, 의결권 충실 행사, 이해상충 방지체계, 기타 주주 활동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범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그 확산을 위하여 자산운용업계와의 간담회 등 지속적 소통이 필요

2.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7.13.)를 개최하여, 신인의무(Fiduciary Duty) 이행 강화 및 주주권의 충실한 행사에 대한 운용사 최고경영진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 공·사모운용사 대상 설명회(7~8월)를 개최하여 점검기준, 점검 결과 모범·미흡사항 등을 직접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 및 이행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